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구 미 시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가 큰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 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감면대상자

- 가.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유흥시설의 소유자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2) 및 제2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납세의무자

3. 재산세 감면내용

가. 감면대상자

-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2) 및 제2호가목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년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

나. 감면내용

- 중과대상 적용시의 중과되는 세액을 감면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시 세율 및 세액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 적용 세율

감면 전 적용세율	감면 후 적용 세율
지방세법 §111①2가목	지방세법 §111①2다목

예시) 4% (§111①2가목) → 0.25% (§111①2다목)

나) 토지 감면액 산출식

1) 제111조 제1항제1호다목 2) 적용세액 - 2) 제111조 제1항제1호나목 적용세액

예시) (분리과세 4% - 별도합산 적용시 세액) 감면

	부과세액	일반세율 적용금액2)	중과세율적용 시부과세액1)	감면세액 1) - 2)
재산세(토지)	200,000	200,000	4,000,000	3,800,000

4. 감면방법 : 직권

5. 기타사항

가.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 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허위로 감면받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6. 참고사항

가. 감면 추계액 : 불 입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다.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마. 기 타 :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
의결 대상 개정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177, 2021. 5. 21.)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적 피해가 큰 유흥시설은 일반과세 대상 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20년 재산세 유흥중과분 부과건 참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감면예상액(a)	786,771					786,771
세출	소 계(b)						
총 비용 (a-b)		786,771					786,77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도 비							
시 비		786,771					786,771
민 간							
기 타							
합 계		786,771					786,771

5. 부대의견

- 시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것으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 세원 발굴 등으로 세원을 확충

6. 작성자 : 세정과 재산세계 남윤지(480-686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감면대상 및 감면율(금액)

구 분	재 산 세		비 고
	건 축 물	토 지	
유 흥 중 과 분 재 산 세	4%→0.25%	【4%(분리과세) - 0.2~0.4% (별도합산)】 차액감면	

2. 감면 예상액

(단위 : 천원)

세 목	대 상 자	감 면 액		비 고
		산 출 내 역	세 액	
	합 계		786,771	
재 산 세	· 유 흥 중 과	· 501건 × (건축물 3.75%, 토지 【4%(분리과세)-별도합산】	786,77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한 승 우
	담 당	김 완 수
	담 당 자	남 윤 지 (480-6863)